

행 정 자 치 부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군도00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중단) 방치 등 사후조치 소홀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화천군

관 련 자 화천군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4. 10. 2.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화천군 군도 00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추진 건과 관련하여 업무를 지휘하는 총괄 책임자이다.

화천군 ○○○○과(구 ○○과)에서는 ○○면 주민들이 행정관청인 화천군청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춘천시 ○○리를 경유하여 민원을 처리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군민통합 차원으로 2003. 8. 21. 주민 숙원사업인 군도 00호선(○○교회~○○○○) 도로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05. 9. 10. 완료하고, ○○면 ○○리에서 ○○리 ○○리구간을 연결하는 총 연장 9.58km 구간 중에 1단계 구간인 1.3km 구간에 대하여 1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6. 2. 15. 착공하여 2013. 4. 5. 준공하였다.

1. 군부대 부동의 구간(사격장)에 대한 대책 없이 공사추진(1단계)

화천군 ○○○○과(구 ○○과)에서는 2004. 6. 8. 군도00호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육군0군단 관할 토지(L=5.58km)에 대하여 ○○

○성 검토 협의하였고, 2005. 8. 18. 육군○○ 00사단 관할 토지(L=4km)에 대하여 ○○○성 검토를 협의하였고, 육군○○ 00사단에서는 도로 편입사항은 동의하였으나 육군0군단에서는 사격장 위험요소가 상존하므로 부동의 하였다.

그렇다면 육군0군단에서 사격장 위험요소 상존을 사유로 미 협의한 구간에 대하여 노선변경 대책 안 마련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화천군 ○○○○과(구 ○○과)에서는 육군0군단 관할 부동의 토지에 대한 대책 검토 없이 2006년 사업을 부당하게 발주하였으며,

또한 열악한 군의 재정임에도 685억원이 투입되는 대형공사를 국·도비 지원방안 등 사업비 확보 대책이 불확실함에도(계속사업비 미승인 / 행정자치부 양여금을 재원으로 추진)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16년간에 걸쳐 무리하게 추진하겠다고 당시 군수공약 사업으로 사업을 착공하였다.

그 결과 2013. 4. 5. 준공(1단계구간 137억원)한 도로가 감사일 현재까지 (2016. 10. 7.) 군부대 부동의 구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로 3년 6개월간 도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산중턱에서 단절되어 있어 행정력 등이 낭비되었다며 지역 언론에 보도 되어 행정신뢰를 실추하고 있는 등 대안 노선 검토 및 추가 사업비 확보 대책이 시급한 상태이다.

2. 도로개설 종점부 등 안전조치 없이 방치

모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도로법」 제55조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점에서 출구예고표지를 출구점의 2km, 1km 전방에, 출구점 예고표지를 150m 전방에, 차로지정표지와 출구점표지를 출구 감속차로 일정지점에 설치하여 직진방향과 출구방향을 안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의 2,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시설유도시설 편 및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에 따르면 설계속도가 50km/h 이상인 구간,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구간, 차로 수나 차도 폭이 변화하는 구간에는 주·야간에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하는 상황을 안내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인 시선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행 중 진행 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 밖, 또는 대향차로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차량이 구조물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방호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화천군 ○○○○과에서는 상기 공사구간의 종점부 지점의 사리도 구간 150m 전방에 출구점 예고표지와 출구 일정시점에 출구방향을 안내하도록 하여 도로이용자들의 원활한 도로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했으며 또한, 상기 사리도 구간 출구 및 막다른 도로 구간에 도로이용자들의 교통사고 방지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선유도시설 및 차량방호 방호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했다.



(2013. 4. 15 준공 종점부)

(사리도 구간 시점부)

그런데도 2014. 10. 2.부터 동 도로확·포장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은 2013. 4. 5. 1단계 공사 준공 후 예산 미확보 등으로 추진이 중단된 사항을 잘 알면서도, 군부대 부동의 구간(사격장)과 중단(1단계) 도로개설 종점부에 대한 안전조치 대책 등 향후 추진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방침결정자(군수)에게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감사자가 현장 방문점검 시까지 방침도 없이 관련 업무를 소극적으로 하는 등 도로중단사업장에 대한 업무를 방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화천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앞으로 군도 00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중 중단된 나머지 노선 구간과 사격장 통과 구간에 대하여 우회선 등을 적극 검토하여 변경 고시 등의 조치를 하시고

② 아울러 중단된 도로 종점부에는 운전자 등의 불편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차선 유도봉 등 안전시설 등을 조속히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동 군도 공사가 장기간 중단·방치되지 않도록 신규 도로사업 발주를 억제하고 예산 확보 방안(특수상황지역사업) 등을 적극 강구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